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69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6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)

가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○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

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되었음.

- 안 부칙 제2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,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
- 충청북도 제2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(2024. 8. 7.)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(2029. 12. 31.까지)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,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향후 대규모 체육 기반시설 조성 과 국제·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 기금 조례 부칙</p> <p>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이 조례는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조례 제4328호 충청북도 체육진흥 기금 조례 부칙</p> <p>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